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구단3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B

피 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3. 27.

판 결 선 고 201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30.자¹⁾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7.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2014. 6. 30.에 이루어졌고, 2014. 7. 7.는 원고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다.

가. 원고는 2014. 6. 14.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본인 소유의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4. 7. 30.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4.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등 모범적인 운전경력을 갖고 있는 점, 화물운송을 하는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하고 늦은 밤이어서 사고의 위험도 적었던 점, 음주 후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같이 음주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무안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기 곤란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할 경우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술에 취한 정도가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혀용한도인 0.05%를 3배 이상 초과하는 0.157%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년의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 때문에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익